

2012. 02. 16.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51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1352	(2) 충주시 지방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3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4	(4) 충주시 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55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6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2012.02.06	2012.02.06	2012.02.10	2012.02.10	총무과장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2.06	2012.02.06	2012.02.10	2012.02.10	기획감사과장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2.06	2012.02.06	2012.02.10	2012.02.10	기획감사과장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02.06	2012.02.06	2012.02.10	2012.02.10	세정과장
(5) 충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2.06	2012.02.06	2012.02.10	2012.02.10	세정과장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2.06	2012.02.06	2012.02.10	2012.02.10	회계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시책 제안을 위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에서는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 민간중심 시민운동 추진, 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제안(안 제2조)
- 협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 학계·경제계, 문화계·언론계, 지역원로 및 사회단체 대표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3조과 제4조)

- 위원이 장기치료, 국외 장기체류와 시의원과 사회단체 대표가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해촉할 수 있다. (안 제6조)
- 협의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 제10조)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정원 : 1,282명(변동 없음)
 - 집행기관의 정원 : 1,263명(변동 없음)
 - 일반직 정원 : 1,010명 → 1,026명 (+16 / 6급이하)
 - 별정직 정원 : 21명 → 5명 (△16 / 별정6급상당)
 - 기타 직렬 : 232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변동 없음)
- 정원책정기준 조정
 - 일반직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재	1%이내	7%이내	26%이내	31%이내	25%이내	10%이상
조 정	1%이내 (-)	7%이내 (-)	27%이내 (증 1%)	31%이내 (-)	25%이내 (-)	9%이상 (△ 1%)

- 별정직

구 分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재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조 정	20% 이내 (증 13%)	40% 이내 (증 6%)	20% 이내 (△ 19%)	20% 이상 (증 2%)	- (△ 2%)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1. 07 .29 「공직자윤리법」 이 일부 개정되어 10.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의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보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3조)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 추가
- 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
- 수당규정 개정(안 제9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다른 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조한 신설(안 제11조)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 의한 감면사항 지속 및 규정내용 명확화
 -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규정외 8개 조항
- 「지방세 특례제한법」 으로 이관에 따른 폐지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외 6개 조항
- 감면사항 일몰시한 적용에 따른 폐지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외 1개 조항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변경·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만들고자 함.
-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건물번호판을 시에서 직접 제작·교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 증명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
- 건물번호판 제작 신청에 따른 교부 수수료 신설(안 별표1)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수수료: 9,300원/1개당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 등 정비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현실화 및 상향조정(안 제5조 제2항)
 -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되게 조정(안 제12조 제1항)
 - 당초계획 :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 의결하기 전까지
 - 변경계획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 의결하기 전까지

- 대부료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안 제35조 제2항)
 - 50만원 초과의 경우 3월 이내 2회 분납 → 삭제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조정 (안 제40조 1호 내지 5호)
 - “시” 외의 자의 건물로 점유되어 매각할 수 있는 시유지 면적 조정
 - 동지역 1,000m² 이하 → 1,500m² 이하
 - 읍·면지역 2,000m² 이하 → 3,000m² 이하
 - “시” 외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면적범위 조정
 - 단독주택일 경우 200m² 이내 → 동지역은 500m² 이내, 읍·면지역은 1,000m² 이내로 한정
-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안 제63조 제1항)
 - 50만원 초과의 경우 6월 2회 분납 →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시책 제안을 위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2조에는 시민화합을 위한 정책개발과 행사 개최, 시민화합을 위한 민간중심 시민운동 추진,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소통의 활성화, 시정의 제도개선이나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등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협의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에는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회의 설치가 가능하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인 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안 제4조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는 자문기관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화합을 이루어 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해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6급상당 보건진료원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별정직 16명을 감원하고 일반직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임.
- 검토결과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 일반직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이 신설되고 행안부의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안 제8조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충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자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종료되고 감면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감면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3년 일몰을 연장하는 등 법령기능 보완, 조례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 등 7개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 현행 조례의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제18조의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은 일몰시한 적용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임.
- 안 제2조(시각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안 10조(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까지의 감면사항은 현행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사항들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안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에서 안 제17조(시행규칙)까지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며,

부칙 제4조, 5조의 경과조치는 기존 조례의 폐지에 따른 법규기능의 연속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 판단됨.

- 검토결과 본 개정내용은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신청의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 안 제6조의 각종 증명 수수료 반환 규정은 기초자치단체가 증명을 요청한 자에게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며
- 별표1의 제2호 가목 일반행정관계에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수수료 신설은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따라 훼손 또는 망실하여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받거나 건물 등의 신·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개정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요구에 따라 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6조와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시기를 법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50만원 초과의 경우 분납을 삭제하는 것임.
-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조정하는 사항임.
- 금번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질의 : 어떤 것을 하겠다는 사업사업을 구상하고 있는가?

○답변 : 통합을 위한 세 부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음며, 운영분과, 지역화합분과, 지역발전분과로 세 부분을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음.

▶질의 : 각계각층에서 한꺼번에 50명 회의를 한다면 의견수렴이 오히려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답변 :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총회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보건진료원의 경력이 많아서 보건소에 있는 사람의 반발이 심하지 않는가?

○답변 : 일반적으로 전환된 만큼 시점을 조정,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음.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되나?

○답변 : 정기적으로 두 번 개최 됨.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 시세감면을 하면 시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답변 : 작년의 경우 4억 200만원 됐음.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건물번호판 교부는 신축건물에 한해서만 하는가?

○답변 : 탈락이 되든가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됨.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연한이 몇 년이 되면 매각하게 되어 있는가?

○답변 : 그런 것은 없음

5. 심사결과

- (1)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4)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